# 遠洋漁業의 現况과 振興方案

## 朱 尤 一

(責任研究員)

- I. 머리말
- II. 遠洋漁業의 問題點
- Ⅲ. 遠洋漁業振興의 必然性
- Ⅳ. 遠洋漁業振興을 위한 方案

### I. 머리말

오늘날 우리의 水產業은 좋게 표현하면 轉換期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危機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沿近海水產資源의 減少, 水質汚濁에 따른 養殖業의 苦戰, UN 海洋法會議 경과에 따른 海外漁場의 減縮 등으로 모두 나름대로의 어려운 問題들을 안고 있다이 중에서 遠洋漁業은 相對國이라는 對外的問題點이 있으므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遠洋漁業을 振興시켜야 되는 當爲性 또한 他漁業分野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韓國遠洋漁業의 現况을 살펴보고, 振興을 위한 方案들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Ⅱ. 遠洋漁業의 問題點

우리의 遠洋漁業은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國內的 要因과 國 外的 要因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아래와 같다.

### 1. 國內的 要因

### 가. 遠洋漁業 企業體의 零細性

우리나라 遠洋漁業體의 零細性은 漁業體의 必 須條件인 漁船의 保有現況에서 단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1977年末 現在 우리나라 遠洋漁業 體는 總78個社며 保有漁船은 850隻이다. 따라서 企業體當 平均 保有隻數는 10.9隻에 이른다. 그 러나 이같은 平均 保有隻數는 50隻以上을 所有 한 3個社에 힘입은 바 크고, 과반수에 해당하는 39個業體가 5隻 以下의 群小企業體들이다. 심한 경우에는 1隻만을 所有한 零細遠洋會社도 現存 한다.

또한 財源別 漁船保有現况은 企業의 零細性을 더 잘 나타내 주고 있다. 總850隻 가운데 自己 資金에 의한 所有는 14% 뿐인 116隻이고,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734隻이 他人資金에 의한 것이다. 他人資金을 內容別로 보면 傭船이 252隻 (29%), 借款이 224隻(26%), 外貨貸付가 210隻 (25%)이고 나머지 48隻(6%)이 기타 여러 資金源의 他人資金에 의한 漁船들이다.

이와 같이 소수의 漁船을 所有하고, 그나마 他人資金의 굴레를 벗지 못한 遠洋業體들이 自 力更生하기는 지난한 일로서 우리나라 遠洋業界 가 아고 있는 가장 큰 問題點이다.

### 나. 遠洋漁船의 老朽化

우리나라 遠洋漁船은 상당수가 日本의 中古船을 導入한 老朽船들이다. 總遠洋漁船 850隻 가운데 11年以上된 漁船이 53%인 450隻이나 되며이 중에는 16年以上된 古船이 72隻이나 包含되어 있다. 이들은 新造船보다 漁獲性能面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修理費의 超過負擔, 修理期間 동안의 休漁 등으로 企業採算性을 惡化시키고 있다.

### 다. 政府의 실질적 支援對策 缺如

政府는 그동안 遠洋漁業振興을 말로만 했지 實質的인 支援對策에는 소홀했다. 이같은 사실 은 政府의 財政投融資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表 ] 遠洋漁業에 대한 財政投融資實績

單位:100萬원

年度	總 計 (A)	水產部門合計 (B)	遠洋漁業 (C)	B/A(%)	C/B(%)
1972	297, 061	6, 340	38	2. 1	0.6
1973	248, 559	5, 404	68	2. 2	1.3
1974	390, 282	4, 454	108	1.1	2.4
1975	670, 578	5, 987	196	0.9	3.3
1976	855, 900*	7, 738	203	0.9	2.6
1977	1, 097, 600*	13, 267	360	1.2	2.7

資料;總計一經濟企劃院 水產部門合計 및 遠洋漁業—水產廳 \*國務總理室 評價報告書

財政投融資 總額은 매년 增加하는 경향이며 이에 따라 遠洋漁業 投融資絕對額도 매년 늘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比率面에서 보면 水產業, 특히 遠洋漁業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졌나를 쉽게 집작할 수 있다. 1976年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總財政投融資額(8,559億원)에서 全水產部門(77.38億원)이 차지하는 比率은 0.9% 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해의 水產部門 對 GNP 構成率은 2.2%(2,604億원)이었다. 劣位에 있는 一次產業을 政策的으로 보호한다는 면에서 상당히소홀한 감이 있다. 그나마 遠洋漁業部門에 投入된 額數된 水產部門 投融資額의 2.6%인 2.03億원에 지나지 않았다. 1976年의 遠洋漁業의 對水

產部門 構成率은 漁獲量에서 30.1%, 輸出額에서 46.3%나 占한 사실을 감안할 때 水產部門內에서도 遠洋漁業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金融 쪽으로부터 충분한 支援을 받은 것도 아니다. 零細한 遠洋業體는 自己資金 力이 없으므로 자연히 日本綜合貿易商社를 비롯한 他人資金에 의존하는 隸屬化 過程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 라. 企業家 精神의 缺如

어려운 與件에 부딪칠수록 훌륭한 企業家의 투철한 使命感이 要求된다. 그러나 일부 遠洋企 業家에게 企業家精神이 缺如되어 있음은 유감된 일이다. 운좋게 滿船, 혹은 魚價上昇이나 바라 고 從業員의 福祉問題는 등한시 한다든지, 더 나 아가서는 遠洋漁業의 將來性이 不透明하다는 것 을 이유로 自己資金은 他分野로 빼돌리고, 政府 의 支援만을 외치는 企業家가 있다면, 이 또한 遠洋漁業의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 叶. 勞動力 確保困難

生產에 직접 參與하는 船員의 確保가 점점 어려워져 간다. 氣候條件도 熱帶地方(참치, 새우漁場) 아니면 寒帶地方(명태, 은대子漁場)같이 견디기 어려운 곳에다가 契約期間이 3年 程度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家族과 떨어져 海外에 체재하며 계속되는 重勞動에 시달려야함은 물론, 바다이기 때문에 海難事故 같은 危險負擔이 크다. 거기다가 低賃金이며 職業에 대한 將來性도 缺如되어 있다. 이와 같은 諸要因은 특히 下級船員 不足現象을 深化시키고 있다.

## 2. 國外的 要因

가. 資源保有沿岸國의 排他的 權利行使 1958年부터 시작된 UN 海洋法會議는 今年 第 3 次 7期會議까지 마쳤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 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各沿岸國들은 UN 海洋 法會議 結果를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200 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國際趨勢이다. 1978年 5月末 現在 總127個 沿岸 國中에 200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한 國家가 66個 國(52%)이며, 나머지 61個國(48%)이 未宣布國 이다. 그러나 이들 未宣布國도 지금까지 200海 里 經濟水域의 宣布를 유보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200海里 經濟水域 宣布國數는 늘 어날 展望이다.

韓國의 遠洋漁業이 外國의 200海里 水域內에서 얼마 만큼의 漁獲을 올리고 있느냐는 아직 밝혀 진 바 없으나, 日本의 漁獲 패턴으로 보아 類推 해 볼 수는 있다. 1975年 日本은 總10,545千% 을 生產하였다. 이 중 自國 200海里內에서의 生 產量이 6,475千%(61.4%)이고 外國 200海里內 에서의 漁獲量은 3,744千%(35.5%), 公海上에 서의 漁獲量은 326千%(3.1%)이다. 따라서 自 國 200海里水域 이외의 漁獲量을 違洋漁業이라 고 볼 때, 總遠洋漁獲量은 4,070千%이며, 이 가우데 92%가 外國 200海里水域內에서 漁獲한 量이다. 같은 1975年度에 韓國은 2,135千%을 生產하였고 이 중 遠洋漁獲量 566千%(26.5%) 가 포함되어 있다. 즉 韓國의 總漁獲量에 대한 遠洋漁獲量이 日本의 그것에 비해서 12.1%포인 트 낮다. 그러나 韓國도 遠洋漁獲量 가운데 外 國 200海里水域內에서의 漁獲은 90% 정도일 것 으로 日本資料로 보아 類推한 수 있다. 즉 遠洋 漁業은 90% 정도가 外國距岸 200海里內에서 이 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沿岸國들이 200海里 經 濟水域을 設定하고 排他的 權利行使를 할 경우, 遠洋漁業이 입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對外的 遠洋漁場 環境變化에 대처하기 위 해 水產廳은 外國과의 漁業協力을 적극 推進하 여 왔다. 1977年末 현재 우리와 漁業協定을 締結한 國家는 8個國이고, 合議覺書 交換國이 14 個國이며,漁業協定을 推進中인 國家가 37個國이다. 이 같은 數值는 그 동안 상당한 水產外交의 成果를 擧揚했음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비록協定締結이나 合議覺書가 交換되었다 하더라도 遠洋漁業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資源保有沿岸國의 排他的 權利行使에 따라 우리 遠洋漁業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項目 은 아래와 같다.

- 1) 入漁料…過多한 入漁料要求豆 漁撈原價量 上昇시킨다。
- 2) 漁獲物要求…漁獲成果나 採算性 등을 고려 치 않고 무조건 일정량의 漁獲物을 요구한다.
- 3) 現地人乘船…技術과 能力이 韓國船員에 비해 훨씬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高額의 賃金을 요구한다.
- 4) 合作事業…兩國이 合作會社를 設立할 때 相對國이 出資割當額을 우리의 援助形式으로 出 資토록 요구한다.
- 5) 事業成果의 危險性…대부분이 新漁場이므로 開發에 따른 막대한 調查開發費所要 및 事業 成果의 危險性이 따른다.

## **屮.** 國際水產機構의 水產資源管理强化

세계에 현존하는 國際水產機構는 25個이며 이 가운데 韓國이 가입하고 있는 水產機構는 6個이다. 이는 日本이 12個,美國이 13個 機構에 가입하고 있는데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國際水產機構는 2次大戰以後 海域別 또는 水產資源別로 關心對象國들이 相互利益과 對象資源의 合理的 保存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設立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각국의 漁獲强 度의 增大에 따라 資源減少現象이 나타나게 되 자 國際水產機構들의 資源規制措置들이 날로 强 化되고 있다. 規制措置 內容을 보면 漁獲量 쿼타制,網目制限,漁獲物 크기制限 외에 新規 會員國 加入抑制 및 지연 등을 통해 入漁에 곤 란을 주기도 한다.

表 2는 韓國이 가입하고 있는 國際水產機構現 况이다. 이 表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뚜렷한 共 通點은 水產機構의 設立年度와 韓國加入年度가 거의 一致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水產機 構의 創立과 동시에 韓國이 가입하였다. 이에

表 2 韓國의 國際水産機構加入現況

名	稱	設立年度	韓國加入 年 度	會員數
IPFC(印度・太平洋ス	k產 理事會)	1948	1950	18
COFI(FAO 水產 委)	員會)	1965	1966	34
IOFC(印度洋 水產 多	長員會)	1967	1967	31
CECAF(中東 大西洋	水產委員會)	1967	1968	29
ICCAT (大西洋 참치	保存委員會)	1969	1970	16
WECAFC(中西大西洋	* 水産委員會)	1974	1974	23

비하여 韓國이 利害關係上 가입을 推進中인 國際水產機構는 아래의 3機構를 들 수 있다.

- 1) IWC(國際 捕鯨 委員會)
- ○1946年 設立, 現會員國數;15個國
- ○會員國資格;協定 署名國과 加入申請書<del></del> 제출하는 國家
- ○對象海域;捕鯨이 행해지는 全海域 및 揚陸 地
- ○對象資源; 고래資源
- 〇機能;研究調査의 수행,資源保存策講究
- 2) IATTC(全美熱帶补利委員會)
- ○1949年 設立, 現會員國數 8個國
- ○對象海域; 東部太平洋
- ○對象資源;황다랭이와 가다랭이, 참치餌料 로 사용되는 魚類, 참치漁船에 漁獲되는 기 타魚類
- ○機能;自體研究陣에 의한 참치調査 保存策

講究

- 3) ICSEAF(東南大西洋 水產委員會)
- ○1969年 設立, 現會員國數 15個國
- ○會員國資格;協定署名國,UN 및 傘下機構 의 會員國,全會員國의 賛成을 얻는 國家
- ○對象海域;東南大西洋
- ○對象資源;全水產資源
- ○機能;資源調查,資源保護對策 講究

이들 3個 機構는 韓國의 遠洋漁業 發展上 가입이 긴요하나 全會員國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는 등 條件이 까다롭다. 이와 같은 사실을 거울삼아 앞으로 胎動할 新國際水產機構에는 우선가입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다. 主漁獲對象 高級魚種의 資源枯渴

한정된 水產資源 가운데 價格이 좋은 高級魚種부터 資源이 枯渴되어감은 당연한 理致이다. 南水洋 고래資源의 枯渴現象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水產學者들은 가다랭이를 제외한 참 치類가 全大洋에 걸쳐 完全開發狀態를 넘어서서 濫獲의 段階에 이르고 있음을 警告하고 있다. 旣開發된 魚類中 濫獲에 따른 資源枯渴의 우려 가 있는 魚種의 數는 적절한 資源保護措置가 없 는 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 라. 生產原價에 비한 輸出魚價上昇의 相對 的 下落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遠洋 漁業은 自己資本,政府,金融支援 등의 國內資 本보다는 輸入商社로 代表되는 外國資本의 도움 으로 크게 成長하였다. 특히 1960年代에 韓國經 濟가 跳躍段階에 進入할 당시 國內資金의 도움 없이 外貨獲得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한 사실은 보람을 느낄만 하다. 반면 에 遠洋漁業이 自己資金 基盤없이 전적으로 輸 出에 의존함으로써 魚價決定權이 外國 輸入商社 에 넘어간 것은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日本商社들은 漁船 및 營漁資金을 貸與하고 漁獲物로 分割償還해 받아가는 과정에서 貸與金에 대한 利子는 물론 魚價造作에 따른 差益도 노린다. 특히 오일쇼크 이후 최근의 生產原價上昇에 비해 輸出魚價上昇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은 表 3에 잘 나타나고 있다. 生產費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油類代는 1974~77年의 3年間에 무려 3倍로 오르고, 漁具代는 2倍로 올랐는데 魚價는 그 동안 단지 19%의 上昇에 그침으로써 遠洋企業體의 經營壓迫을 加重시켰다.

表 3 魚質의 油類代 및 漁具代의 上昇率 比較

單位;\$

區 分	單 位	1974 (A)	1977 (B)	上昇率(%)   (B/A)
魚價	날개 다랭이 S/T當	1,055	1, 260	119
漁具代	Main Line Coil當	23	46	200
油類代	톤 當	38	136	358

資料;韓國遠洋漁業協會

#### 마. 漁場의 廣域性

우리나라 遠洋漁業은 投入漁船隻數로 보아 아직도 참치漁業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참치類는 汎大洋的 回遊를 하므로 漁場이 廣範 國하게 移動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1~2個國 상대의 入漁權獲得으로 漁場問題가 解決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 南美의 새우漁場도 역시이 같은 難點이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遠洋漁業의 지속적인 發展을 狙害하는 問題點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같은 難點 때문에 어느 정도 世界水準의 궤도에 오른 遠洋漁業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山積한 問題點을 극복하고 遠洋漁業을 振興시켜야 할 必然性이 重旦大하다고 보는 바이다.

## Ⅲ. 遠洋漁業振興의 必然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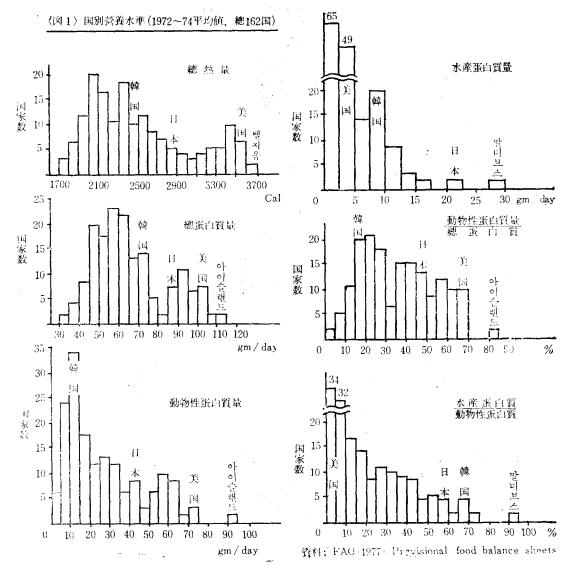
遠洋漁業이 당면한 諸問題點을 극복하고 이를

振興시켜야 한다는 必然的인 理由를 對內的 要因과 對外的 要因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기로 한다.

#### 1. 對內的 要因

圖 1은 FAO(1977)에서 調査한 總 162個國의 國別營養資料(1972~74年 平均値) 曼 整理한 ユ 라프로, 이로부터 韓國의 營養水準을 비교해 보 았다. 總熱量과 總蛋白質攝取量에서 韓國은 세 계의 中位圈에 속하므로 어느 정도는 자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하겠으나, 動物性蛋白質 攝 取量에서는 韓國이 最下位圈에 속하고 있다. 均 衡된 健康管理와 특히 어린이들의 頭腦成長에 良質의 動物性蛋白質이 결정적인 역할을 擔當한 다는 營養學者들의 主張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에는 대폭적인 動物性蛋白質의 擴大供給이 절실 히 要望된다. 한편 水產蛋白質 攝取量에 있어서 는 韓國은 1人日當 9.0g으로 世界에서 가장 많 은 水產蛋白質을 攝取하는 말디브스(28.4g), 日 本(22.1g), 아이스랜드(15.5g) 등의 國家보다 훨씬 뒤떨어지나 上位圈에 속하는 것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이를 絕對量으로 보지 않고 相 對量으로 보면 韓國人의 水產食品에 대한 嗜好 性과 依存性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韓國人의 總蛋白質攝取量에서 動物性蛋白質이 차지하는 比重은 18.2%로 世界下位 그룹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動物性蛋白質 攝 取量에서 水產蛋白質이 차지하는 比率은 68.7% 에 이르러,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낸 말디브스의 92.8%에는 이르지 못하나 日本의 55.1%보다는 높고 世界 最上位 그루웁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綜合的으로 韓國人의 營養水準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總熱量은 水準級이나 動物性蛋白質의 供給이 크게 부족한데, 이 정도의 水準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水產蛋白質의 攝取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韓國人의 水產物에 대한 嗜好性 및 依存性은 앞으로 人口의 自然增加 및 所得增大 에 따라 需要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表 4는 輸出需要를 제외한 國內水產物의 長期需 要展望으로 1991年에는 總量面에서 1976年의 需 要水準의 3倍에 해당하는 5,178千%에 달할 것 으로 推定된다.

表 4 水産物의 國內需要展望

	1975	1976	1981	1986	1991
年間 1 人當 (kg) 練 量 (千%)	44. 2 1, 558	47.8 1,714	68. 1 2, 642	93. 7 3, 944	114. 4 5, 178
10 22 (1111					

資料;韓國開發研究院

그러면 輸出需要와 더불어 이 같은 폭발적인 需要增加를 어떻게 供給面에서 補充해 줄 것인가 가 問題이다. 解決方法은 自國生產과 輸入의 두 가지 길이 있으나, 輸入보다는 自國生產이 바람 직하다는데는 再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自國生產은 다시 國內生產과 海外漁業을 통한 國內搬入의 두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우리 나 라의 沿近海漁業은 擴大再生產이 限界點에 다달 은 감이 있다. 이미 西海岸의 조기, 東海岸의 오징어 등 魚種別로 보면 資源枯渇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沿近海漁場利用面 을 볼 때, 우선 韓國의 周邊國家들은 모두 水產 强國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76年 FAO 漁獲量統計를 基準으로 살펴보면, 日本이 1位, 조런이 2位, 中共이 3位, 韓國이 7位, 臺灣이 18位이며, 北韓은 21位이다. 이들 國家들이 모 두 沿近海漁業振興에 政策的 配慮를 하고 있으 므로 藍國의 周邊水域인 黄海, 東海, 東支那海 에서의 漁獲强度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 다. 이렇게 될 경우 沿近海漁場의 再生產性이 低下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정된 資源再生 産力에 비추어 韓國의 漁獲쉐어를 대폭 늘리기 도 쉽지 않다. 養殖業을 확장시킬 수는 있으나, 늘어나는 需要增加를 감당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이런 경우 遠洋漁業의 任務는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 2. 對外的 要因

韓國은 水產業에 관한 한, 世界的인 水產國으로서의 基盤을 이미 다져 놓았다. 1976年 현재 韓國은 2,407千%을 生產하여 世界 7位로 全世界漁獲量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水產物輸出額은 567百萬달러로 世界 總水產物輸出額의 7.1%를 占함으로써 5位에 랭크되어 있다. 國民 1人當 漁獲量을 비교해 보아도 韓國은 67.1 kg을 生產함으로써 全世界 平均值인 18.2kg에비해 3.7倍나 되며, 日本(94.2kg)보다는 떨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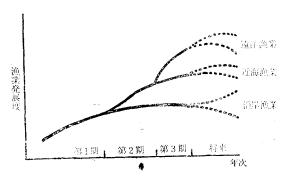
나 소련이나 美國보다는 훨씬 많이 生産하고 있 다〈表 5〉.

表 5 **國民 1人當 漁獲量 比較(1976**年度)

	人	口(百萬名)	漁獲量 (千%)	1 人當漁獲量 (kg/人)
全世界		4, 045	73, 467	18. 2
韓國		35. 9	2, 407	67. 1
日 本		112.8	10, 620	94. 2
소 련		256.7	10, 134	39. 5
美 國	]	215. 1	3, 004	14.0

이와 같이 우리는 世界的 水產國으로서의 基盤을 確立해 놓았음은 물론, 앞으로 당분간은 國際競爭力이 강할 것으로 推定된다. 이 같은 推定의 근거로는 첫째 당분간은 後發遠洋漁業國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外國漁場利用條件이 비교적 좋았던 1976年 이전에 遠洋漁業에 進出할만한 條件을 갖추었던 나라들은 이미 모두 遠洋漁業國으로 발돋움했다고 생각된다. 漁業發展段階(圖 2)로 보았을 때 第1期의 沿岸漁業이 어느 水準에 올라야 第2期의 近海漁業으로, 다시 沿近海漁業의 發展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에 遠洋漁業으로의 擴大發展이 이루어진다.

圖 2 漁業發展段階



우리나라의 경우 1948年「朝鮮遠洋漁業株式會 社」가 創立되고 당시의 遠洋의 개념인 濟州島南 方 70마일 海上에서 試驗操業한 것이 第1期인 沿 岸漁業에서 第2期인 近海漁業으로의 移行期라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57年 印度洋에서의 참 치延繩試驗漁業이 第3期로의 移行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韓國이 9年間이란 짧은 期間에 第2期를 거쳐 第3期로 移行할 수 있었던 것은 當時의 遠洋環境이 비교적 어수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海洋分割時代에는 왠만한 基盤을 닦지 않고는 第3期로의 進行이 어려우 며 위험한 政策을 추구하려는 國家도 드물 것이 다.

FAO의 水產統計年報로부터 推定된 1976年 現在 遠洋漁業國은 20個國으로 생각된다. 20個 遠洋漁業國 이외의 國家들은 아직도 沿岸漁業水準에 머물러 있으며, 더우기 陸地에 광대한 未開發資源이 있는데도 人力이나 資本力의 未備로 開發이 遷延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오늘날 같은 200海里時代에 갑작스런 遠洋漁業國으로의 발돋움은 어려울 것이다.

海洋分割時代에 既存遠洋漁業國이 당분간 固

그런데 아무리 韓國이 다른 遠洋先進國에 비 하여 優位에 있다 하더라도 바다의 生產力이 限 界에 도달하였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다로부터의 潛在漁獲量은 거의 現漁獲 量의 倍나된다고 報告되어 있다(Gulland, 1972). 그러나 潛在漁獲量 102.7百萬%도 현재의 漁獲 技術로 현재 우리가 利用하는 資源에 대한 潛在 漁獲量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광대한 海洋 이므로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有用水產資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의 潜在漁獲量은 알 수가 없으므로 위의 數値에 서 빠져 있다. 또한 막대한 資源量이 있는 것이 이미 밝혀졌으나, 아직 開發하지 않고 있는 水 產資源으로부터의 潜在漁獲量도 물론 빠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금년 겨울 試驗操業하기 로 決定한 南氷洋 크릴(krill)資源이다. 크릴의 潜在漁獲量 推定値는 적어도 1億 tol 넘는다.

表 6 魚類別 年間潜在 漁獲量 및 最近漁獲量

單位;百萬%

	溫	帶	海	域	熱	帶海	域	合 計
	北大西洋	北太平洋	南大西洋	南太平洋	大西洋	太平洋	印度洋	H #1
大型浮魚類(참치, 연어類)	僅少	0.6	_		1.1	1.9	0.7	4.3
底魚類(대구, 넙치, 볼락, 돔)	10.6	3.5	4.9	0.8	2.9	12.4	7.4	42.5
沿岸浮魚類(청어, 멸치, 고등어)	10.3	5.7	6.7	12.3	4.9	7.7	6.0	53.6
甲殼類(새우, 게, 닭새우)	0.3	0.4	0.1	0.1	0.4	0.8	0. 2	2.3
合 計	21, 2	10.2	11.7	13.2	8.9	22.8	14.3	102.7
(1970年度 漁獲量)	15. 4	8,0	4.1	9.5	3.3	12.7	2.7	55.7

資料; Gulland, J.A. The Fish Resources of the Oceans, 1972. —熱帶海域 當該大洋에 포함되어 있음

定된다고 假定할 때, 이 가운데는 韓國이 比較 優位에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旣存遠洋漁 業國의 대부분이 先進工業國들이기 때문이다. 1977年 美, 蘇의 일방적 200海里 실시로 일시에 漁場을 상실한 우리의 北洋船團이 속속 새로운 漁場으로 轉船함으로써 短時間內에 危機를 극복 할 수 있었던 것도 比較優位를 證明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보아 海洋生產力은 이들 未利用資源을 고려의 대상에서 빼고라도,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增獲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한가지 韓國遠洋漁業을 振興시켜야 할 必然性으로 우리의 遠洋漁業은 오늘날 같은 國 際協力時代에 있어서 後進國에 進出하는데 他產 業에 비해 有利한 점도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근거의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內產業別 經 營分析資料에 의하면 投下資本回轉率,從業員 1 人當 附加價值,從業員 1人當 人件費 등의 면에 서 資本漁業이 他產業의 平均值와 비교할 때 크 게 떨어질 바가 없다.

表 7 產業別 經營分析 (1976年)

	資本漁業	<b>装</b> 菜	製造業	食料品業
總 資 産(百萬원)	6, 151	5, 683	5, 645	6, 162
固定資產 比率(%)	64.1	53. 2	44. 2	37.8
自己資本 比率(%)	1.4	37. 4	21.5	17, 1
總資本 回轉率(回)	0.63	0, 86	1.19	1.61
自己資本 回轉率(回)	74.40	2, 13	5,60	9.67
從業員1人當 附加價值(千원)	3, 415	1, 899	2, 013	2, 527
從業員 1人當 人件費(千원)	1,011	1, 228	855	951

資料;韓國銀行,企業經營分析,1977.

둘째,後進國投資의 경우, 相對國의 政局이 不安할 경우,固定資產(船舶)의 반출이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後進國은 政局이 不安 하며, 일단 政權이 바뀌면 陸地에 建設한 工場, 機械 등은 반출이 어려우나,漁業의 경우는 固定 資產이 漁船이므로 逃避가 용이하여, 危險負擔 率이 相對的으로 낮다.

綜合的으로 보아 資本協力에 의한 後進國進出에 있어, 漁業分野가 他業種에 비해 劣位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 Ⅳ. 遠洋漁業振興을 위한 方案

이상에서 遠洋漁業이 당면한 問題點과, 이를 극복하고 遠洋漁業을 振興시켜야 할 當爲性을 考察해 보았다.

오일·쇼크의 여파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친 美國, 소련을 위시한 각 국의 200海里宣布는 다시 우리 遠洋漁業을 좌초 시켰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方案이 그 동 안 水產廳을 중심으로 案出되었는데, 지금까지 의 遠洋漁業의 振興方案을 要約하여 본다.

#### 1. 水產雞 方案

水產廳案은 먼저 旣存漁場의 繼續操業權確保 와 新漁場開拓을 위한 對外的 協力方案들을 둘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協力方案으로 는 아래 5가지 方案이 포함된다.

オ・國際水産機構斗의 紐帶强化 및 新規加入 推進

- 나. 漁業協定 締結國과의 協力强化
- 다. 기타 主要沿岸國과의 漁業協定 締結努力 및 漁業協力 推進
- 라. 外國水產責任者의 招聘外交 및 研修生受 託教育
  - 마. 新漁場開發 調査擴大

두번째가 당면한 對內的 不况打開策들이다.

- 가. 新規投資의 抑制로 당분간 船幅增大 不許
- 나. 旣存業體의 經營單位를 5隻以上 所有하게 끔 誘導함으로써 零細企業體가 갖는 제약요인을 어느 정도 克服케 한다.
  - 다. 生產一加工一輸出을 系列化시킨다.
- 라. 出漁資金을 適正한 水準까지 支援해줌으로써 對外依存性을 脫皮토록 한다.
  - 마. 負擔輕減을 위한 制度改善
  - 바. 船員의 福祉向上

이상의 方案外에 政府는 「遠洋漁業振興對策委 員會」(大統領令 第9,087號, 1978.7.10)을 設置 하여 新海洋秩序에 對處해 나갈 積極的인 支援 策을 모색하도록 했다.

#### 2. 追加 振興方案

위의 政府(水產廳)의 遠洋漁業을 위한 長期的 振興方案 및 短期的 不况打開策은 모두 妥當性 이 있는 對策들이다. 政府對策外에 追加로 아래 와 같은 方案도 考慮해 봄직하다.

가. 지금까지의 輸出爲主의 遠洋漁業政策에서

蛋白質供給源으로서의 遠洋漁業을 생각할 段階 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의 水產物需要增大에 따 른 一部魚種의 品貴 및 價格暴騰을 막는 조치도 되고 長期的으로 國民營養水準 向上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의 참치類의 國內搬入 誘導 및 南水洋 크릴操業에 意慾을 보이는 것도 이와 脈 絡을 같이 한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은 遠洋트를漁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로서 南美의 새우트를 漁業을 보면, 이 漁業은 漁法上 새우뙊마이 漁獲되지 않고 기타 底棲魚類가 混 獲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80% 정도의 雜魚種이 새우 같은 輸出對象魚種이 아니기 때 문에 甲板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바다로 버려지 고 있다. 甲板上에 올라와 選別하기까지의 時間 經過는 魚類가 살아남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따라서 다시 바다로 버려진다고 하여 資源保護 에 도움이 안된다. 이 같은 現象은 大西洋 트롤 漁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 廢棄魚類의 國 內搬入이나 其他利用方法의 講究는 상당한 增獲 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나. 遠洋漁業에도「잡는 漁業에서 기르는 漁 業」이란 概念導入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는 遠洋漁業하면 漁撈에 의한 漁獲을 생각하고 養 殖에 의한 生產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淺海의 汚染度 및 養殖對象魚種의 成長度 등으로 보아 우리의 淺海보다 조건이 좋 은 外國 淺海養殖適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곳을 科學的인 調査 및 經濟的 安當性을 檢討한 뒤에 開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앞으로는 國內綜合貿易商社의 遠洋漁業參與를 勸獎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國內商社의 基盤이나 資金 동원력이 미약하여 客主化한 外國商社의 金利나 償還期間條件보다 오히려 不利한 條件을 國內商社가 제시함으로써 相互 連

繋가 잘 안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國內綜合貿易商社도 基盤이 다져져 가고 있으므로 遠洋會社와 相互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海外漁業協力公社」(假稱)의 設置運營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에 상당하는 日本의 海外漁 業協力機構로는 「海外漁業協力財團」과 「海洋水 產資源 開發센터」 및 「東南亞 漁業開發센터」 등 이 있다. 우리의 경우 日本처럼 여러 機構를 設 置運營할 形便은 못되나, 이들 機構의 業務內容 을 綜合한 單一機構로서 「海外漁業協力公社」(案) 을 提示한다.

海外漁業協力公社 機構(案)

- 1. 海外協力部…民間 海外漁業協力事業에 대한 長期低利融資
- 3. 水產資源 開發部…자체 試驗調査船에 의한 漁場調査 및 漁具開發
- 4. 調查研究部…海外水產情報의 蒐集分析 吳海外派遣專門家의 育成

위의 機構(案)와 관련하여 1977年末까지의 海 外漁業協力實績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韓國은 外國漁場確保를 위해 總 14個國에 25個 合作投資會社를 設立運營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既存會社의 規模나 新規會社의 設立이 增 加할 展望이다. 따라서 業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海外協力部의 임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海外研修部는 주로 「韓國漁業技術訓練所」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業務를 吸收統合하도록 한 다. 위의 訓練所는 원래는 政府가 당시 부족한 海技士를 養成하기 위하여 UNDP와 共同事業으로 1965年 遠洋漁業技術訓練所란 명칭으로 발족 한 機關이다. 그뒤 몇차례 名稱變更과 아울려 機構를 확대 개편하며 運營하여 왔다. 同 訓練 所는 全額無料로 國內訓練生을 教育시키는 외에 최근에는 政府의 對外技術供與計劃에 의한 外國 訓練生受託教育도 실시하고 있다. 1977年末까지 의 水產部門 外國人訓練實績은 總 70名(25個國) 가운데 韓國漁業技術訓練所가 64名(23個國)의 訓練生을 담당했다.

그런데 최근의 遠洋漁業에 人力이 부족하다는 말은 低賃金의 下級船員 不足現象이지 高級海技 士에 나타나는 現象은 아니다.海技士는 水產系 大學,專門學校 등에서 충분히 輩出되고 있다. 따라서 韓國漁業技術訓練所를 통한 全額國費負 擔形式의 海技士養成은 水產教育機關 출신들과 衡平에도 어긋나며 過剩養成이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므로 同 訓練所를 海外研修部에 吸收 統合하여 內國人訓練은 당분간 중지하고, 外國 訓練生만 受託教育시키도록 한다.

遠洋漁業을 위한 試驗操業이 시작된 1957年부터 1977年末까지의 滿20年間에 政府 및 民間이실시한 海外漁場調査 및 漁具開發試驗事業實績은 總 27回이다. 이 같은 事業은 막대한 開發費의 조달이 先行하며, 試驗船에 의한 組織的 調査가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水產資源開發部가 이같은 일을 맡아 組織的 調査를 실시토록 한다.

海外水產情報의 蒐集分析體系의 정비도 시급한 과제이며, 海外派遣專門家의 育成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調査硏究部를 두어 이 業務를 擔當토록 한다.

머리말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遠洋漁業은 지금 轉換期에 처해 있다. 이는 海外漁場環境이 새로운 秩序確立을 위해 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激變期를 우리가 危機意識에 휩싸여 과감히 挑戰하지 않으면 우리의遠洋漁業은 영원히 再起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의 遠洋漁業은 海洋分割의 時代인 동시에 國際協力時代에서의 漁業이다. 요사이를 轉換期라指稱하는 理由도 遠洋漁業國과 沿岸國이 相互協力하는 關係를 再定立해 나가는 과정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關係가 마무리되고 安定期에 들어선 후, 우리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것이다. 遠洋漁業에서 旣得權行使는 상당한 威力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世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外國漁 業資本으로 부터의 獨立,相對沿岸國과의 相互 協力에 의한 漁撈漁獲 및 기르는 養殖漁業의 실 시등을 통한 새로운 概念으로서의 遠洋漁業을 뜻하기 위해 "海外漁業"이란 用語를 導入하고 政府의 政策的 배려와 企業家의 創意力발휘를 통해 轉換期의 海外漁業을 슬기롭게 振興시켜 나갔으면 한다.